

부산광역시체육회  
각종위원회 운영규정

## ● 부산광역시체육회 각종 위원회 운영 규정

제정	2016년 06월 15일
전부개정	2017년 07월 24일
개정	2018년 09월 10일
개정	2018년 12월 10일
개정	2019년 09월 10일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부산광역시체육회(이하 “체육회”라 한다) 규약 제37조에 따라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.

1. 운영위원회
2. 생활체육위원회
3. 재정위원회
4. 학교체육위원회
5. 여성체육위원회
6. 스포츠교류위원회
7.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
8. 경기력향상위원회
9.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<호신설 2018.09.10.>
10. 기타 체육회 규약 제37조제2항에 따라 이사회 의결로 설치되는 위원회  
<개정 2018.09.10.>

**제3조(구성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1. 위원장 1명
2. 부위원장 3명 이하
3. 위원 11명 이상 15명 이하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 <개정 2019.09.10.>

**제4조(위원의 위촉 등)** ① 위원은 위원회의 목적과 활동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

고 있는 사람으로서 회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체육회 부회장을 우선 선임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규약 제29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
2. 회원종목단체의 체육지도자(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) 및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.(경기력향상위원회에 한정한다.) <개정 2019.09.10.>

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회장이 체육회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.

**제5조(위원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
**제6조(임기)**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체육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
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**제7조(위원의 해촉)**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.

1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4. 제11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

5.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

**제8조(회의의 소집 등)** ①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**제9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**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

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로 본다.

**제10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**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. <개정 2018.12.10.>

**제11조(제척 및 기피)**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**제12조(경비의 지급)** 체육회 규약 제39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3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·심의한다. <개정 2018.09.10.>

1. 운영위원회

- 가.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나.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- 다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라. 이사회 부의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
- 마. 위원회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타 위원에 속하지 않은 사항

2. 생활체육위원회

- 가. 생활체육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- 나. 생활체육의 진흥방법에 관한 사항
- 다. 생활체육지도자의 양성 및 자질향상에 관한 사항
- 라.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- 마. 생활체육 시설 조성, 운영,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
- 바. 기타 생활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

3. 재정위원회

- 가. 예산수립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
  - 나. 기타 재정에 관한 사항
4. 학교체육위원회
- 가. 학교 운동부 창단에 관한 사항
  - 나. 우수선수 발굴·육성에 관한 사항
  - 다. 학생, 학교 정책 종목 지원에 관한 사항
  - 라. 기타 학교체육 육성지원 협의에 관한 사항
5. 여성체육위원회
- 가. 여성체육의 육성지도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 - 나. 여성체육인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
  - 다. 기타 여성체육에 관한 사항
6. 스포츠교류위원회
- 가. 국제·국내대회 유치 및 개최계획, 참가지원 타당성에 관한 사항
  - 나. 국제·국내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시설, 인력 및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
  - 다. 국제·국내 교류 대회 및 행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
  - 라. 기타 국제·국내대회의 유치 및 개최, 참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7. 스포츠클럽육성위원회
- 가. 학교 및 청소년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
  - 나. 생활체육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에 관한 사항
  - 다. 기타 스포츠클럽육성에 관한 사항
8. 경기력향상위원회
- 가. 종합적 경기력향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
  - 나. 선수강화훈련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다. 강화훈련 평가,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
  - 라. 부산체육 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  - 마. 실업팀 창단 및 우수선수 발굴, 육성에 관한 사항
  - 바. 경기지도자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

- 사. 우수선수 확보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
  - 아. 경기력향상육성비 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
  - 자. 체육회 실업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
  - 차.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
  - 카. 과학적 훈련방법 개발에 관한 사항
  - 타. 기타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
9. 부산체육미래발전위원회 <호신설 2018.09.10.>
- 가. 체육발전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
  - 나. 체육 분야의 새로운 문화 조성을 위한 구체적 대안 마련에 관한 사항

## **부 칙(2016.06.15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17.07.24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임기에 대한 예외)** 제6조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규약 부칙 제3조에 따라 새로 선출되는 회장은 임기시작 직후 이 규정 제2조에 따른 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수 있다.

**제3조(경과조치)** 이 규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전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.

## **부 칙(2018.09.10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18.12.10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 칙(2019.09.10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규정은 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경과조치)** 제4조제2항제2호 개정 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20년 정기 총회일까지로 한다.